

2020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 공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부터 11조의3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에 의거
“2020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 2.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이 사 장

필수 확인 사항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 신청,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서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http://www.insports.or.kr>

전문스포츠지도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55개 종목)

검도, 골프, 공수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루지,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키, 스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태권,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0.4.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250)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석사과정 한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15.1.1 이후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20.4.4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주1)}				○			○ (250)	경과 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석사과정 한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15.1.1 이후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20.4.4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주1)}				○			○ (250)	경과 조치
특별 과정	· '20.5.30 현재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 종목의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250)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3.2 ~ 3.10	응시수수료 납부 3.2 ~ 3.17	시험일 4.4	합격자 발표 4.24	필기과목(4과목)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5.8 ~ 5.15	연수 5.30 ~ 11.15	현장실습 7.30 ~ 11.15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11.27	연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1) 적용시한 :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0.5.9 현재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	○	○ (90)	
	· '20.5.9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주1)}				○	○	○	○ (90)	
	· '20.5.9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 '20.6.11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교과사(체육과목)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2)}					○	○		경과 조치
	· '20.6.11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교과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20.6.11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20.6.1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일 것						○	○ (40)	
	· '20.6.1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2)}						○	○ (40)	경과 조치
추가 취득	· '20.6.11 현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4.9 ~ 4.17	응시수수료 납부 4.9 ~ 4.17	시험일 5.9	합격자 발표 5.28	필기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5.29 ~ 6.5	응시수수료 납부 5.29 ~ 6.8	시험일 6.11 ~ 7.5	합격자 발표 7.9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7.10 ~ 7.16	연수 7.20 ~ 9.20	현장실습 7.20 ~ 10.18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11.6	연수기관 국기원, 동아대, 조선대, 충남대, 한체대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1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최종 불합격(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주2) 적용시한 : 2020년 12월 10일까지

■ 자격종목(57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핸드볼라이딩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0.4.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 (120)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	○	○ (120)	경과 조치
	· '15.1.1 당시 해당 자격 종목의 종전 3급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주1)}	○	○	○	○ (120)	경과 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	○	○ (120)	경과 조치
	· '15.1.1 당시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주2)}	○	○	○	○ (120)	경과 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	○	○ (120)	경과 조치
	· '15.1.1 당시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주3)}	○	○	○	○ (120)	경과 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	○	○ (120)	경과 조치
특별 과정	· '20.7.25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3)}				○ (40)	경과 조치
	· '20.6.11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 '20.7.25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중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40)	
	· '20.6.1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일 것			○	○ (40)	
	· '20.6.1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3)}			○	○ (40)	경과 조치
	· '20.6.11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20.4.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 '20.6.11 현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추가 취득	· '20.6.11 현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필기	점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4과목)	
	3.2 ~ 3.10	3.2 ~ 3.17	4.4	4.24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실기	점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구술	5.29 ~ 6.5	5.29 ~ 6.8	6.11 ~ 7.5	7.9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10 ~ 7.17	7.25 ~ 10.11	7.25 ~ 10.25	11.6	국민체육진흥공단, 원광대	

주1) 적용시한 :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2) 적용시한 :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3) 적용시한 : 2020년 12월 10일까지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0.5.9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 '20.6.11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 '20.6.11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3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 '20.6.11 현재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 '20.6.11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필기	점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4.9 ~ 4.17	5.9	5.28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점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구술	5.29 ~ 6.5	5.29 ~ 6.8	6.11 ~ 7.5	7.9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10 ~ 7.16	7.20 ~ 9.20	7.20 ~ 10.18	11.6	강릉원주대 등 20개 기관	

※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22년까지 합기도장 체육지도사 배치 의무화로 인해 2급류 필기시험 합기도 종목 합격자 부족 시 합기도 종목에 한하여 추가 검정을 시행할 수 있음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60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방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줄넘기,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라잉디스크, 피구,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0.5.9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 '20.6.11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1)}		○	○	○ (40)	경과 조치
	· '20.6.11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 '20.6.11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 '20.6.11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 '20.6.11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 '20.6.11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 '20.6.11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 '20.6.11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4.9 ~ 4.17	5.9	5.28	필수(1): 유아체육론 선택(4):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연수	5.29 ~ 6.5	5.29 ~ 6.8	6.11 ~ 7.5	7.9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10 ~ 7.16	7.20 ~ 9.20	7.20 ~ 10.18	11.6	가톨릭관동대, 경남대, 광주대, 중앙대, 호서대	

주1) 적용시한 : 2020년 12월 10일까지

노인스포츠지도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58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방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0.5.9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 '20.6.11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 '20.6.11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 '20.6.11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 '20.6.11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 '20.6.11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 '20.6.11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추가 취득	· '20.6.11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4.9 ~ 4.17	5.9	5.28	필수(1): 노인체육론 선택(4):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연수	5.29 ~ 6.5	5.29 ~ 6.8	6.11 ~ 7.5	7.9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10 ~ 7.16	7.20 ~ 9.20	7.20 ~ 10.18	11.6	가톨릭관동대, 대전대, 목포대, 신라대, 연세대, 이화여자대, 호남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34개 종목)

골볼, 궁수도,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스노우보드, 승마, 아이스하키, 알파인스카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양궁, 유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핸드볼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0.4.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 (250)	
특별 과정	· '20.7.25 현재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종목의 3년 이상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250)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4과목)			
	3.2 ~ 3.10		3.2 ~ 3.17	4.4	4.24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장애인스포츠론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5.29 ~ 6.5		5.29 ~ 6.8	6.11 ~ 7.5	7.9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10 ~ 7.17		7.25 ~ 12.27	7.25 ~ 12.27	12.30		국민체육진흥공단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0.5.9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 '20.6.11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1)}					○	○	○ (40)	경과 조치
	· '20.6.11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 '20.6.11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40)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20.6.11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주2)}						○		특례
	· '20.5.9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2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1과목) ^{주3)}	○	○	○ (40)	
	· '20.5.9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4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1과목) ^{주3)}	○	○	○ (40)	
	· '20.5.9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5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1과목) ^{주3)}	○	○	○ (40)	
추가 취득	· '20.6.11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4.9 ~ 4.17		5.9	5.28	필수(1) : 특수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5.29 ~ 6.5	5.29 ~ 6.8	6.11 ~ 7.5	7.9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10 ~ 7.16		7.20 ~ 9.20	7.20 ~ 10.18	11.6		대구대, 백석대, 용인대, 원광대		

주1) 적용시한 : 2020년 12월 10일까지

주2)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3) 필기1과목 : 특수체육론

■ 건강관리운동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0.6.20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1)}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	○	○ (200)	
	· '20.6.20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	○	○ (200)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	○	○	○ (200)	경과 조치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	○	○	○ (200)	경과 조치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8과목)				
필기	5.14 ~ 5.22	5.14 ~ 6.1	6.20	7.6	가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검사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검정내용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7.6 ~ 7.10	7.6 ~ 7.13	7.18 ~ 7.20 ^{※3)}	7.23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국민체육진흥공단		
연수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				
	7.24 ~ 7.30	8.1 ~ 11.15	8.1 ~ 11.15	11.27	순천향대, 연세대, 조선대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1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최종 불합격(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주2) 적용시한 :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3) 응시인원에 따라 7월18일~20일 중 시행 예정으로, 일정 확정 시 추후 홈페이지 공지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합격한 해의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 나이 요건 충족 기준일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첫 절차의 시험일 기준
 - ※ 첫 취득절차가 필기인 경우 필기시험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실기인 경우 실기시험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요건(만 18세)을 충족해야 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최종제출일('21.2.28)이후 3월 발급 ※사전 발급 불가

□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전 관련법령에 의거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조화를 실시하며, 조화 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 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자격검정 및 연수 수수료

(단위 : 원)

자격구분		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	연수	자격증 발급(재발급)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500,000	1,000
	특별과정	-	-	500,000	1,000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0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추가취득	-	30,000	-	1,000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50,000	1,000
	특별과정	18,000	30,000	150,000	1,000
	추가취득	-	30,000	-	1,000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0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추가취득	-	30,000	-	1,000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0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추가취득	-	30,000	-	1,000
노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00,000	1,000
	특별과정	-	30,000	150,000	1,000
	추가취득	-	30,000	-	1,000
건강운동관리사	일반과정	18,000	30,000	400,000	1,000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500,000	1,000
	특별과정	-	-	500,000	1,000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18,000	30,000	250,000	1,000
	특별과정	18,000	30,000	150,000	1,000
	추가취득	-	30,000	-	1,000

※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따른 택배비는 본인 부담

실기 · 구술기관 연락처

자격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사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02)2144-8171	* 태권도 종목에 한해 국기원을 해당 자격 단일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
	국기원(태권도)	063)320-0210~0212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031)526-9447~9448	
	국기원(태권도)	063)320-0210~0212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77	

연수기관 연락처

자격구분	기관명 및 전화번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77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5)	국기원 063)320-0210~2	동아대 051)200-6350	조선대 062)230-7404	충남대 042)821-6441	한체대 02)410-6662~4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77	원광대 063)850-638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0)	강릉원주대 033)640-2647	건국대 043)840-3900	경기대 031)249-9082	경남대 055)249-6380	경상대 055)772-2290	경희대 02)959-9047	계명대 053)580-5513
	군산대 063)469-4641	부경대 051)629-5633	안동대 054)820-7380	용인대 031)8020-3166	인천대 032)835-8570	전남대 062)530-0550	전북대 063)270-3590
	제주대 064)754-8318	중앙대 02)820-6478	충남대 042)821-6403	충북대 043)249-1805	한양대 031)400-5727	호서대 041)540-5860	
유소년스포츠지도사 (5)	가톨릭관동대 033)649-7778	경남대 055)249-6380	광주대 062)670-2209	중앙대 02)820-6478	호서대 041)540-5869		
노인스포츠지도사 (7)	가톨릭관동대 033)649-7959	대전대 042)280-2910/2924	목포대 061)450-6095	신라대 051)999-5574	연세대 02)2123-6582	이화여자대 02)3277-2556	호남대 062)940-3706/3617
건강운동관리사 (3)	순천향대 041)530-1544	연세대 02)2123-8139	조선대 062)230-7404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77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4)	대구대 053)850-6080	백석대 041)550-2989	용인대 031)8020-3160	원광대 063)850-6617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www.insports.or.kr) : 원서접수, 연수등록, 결과발표 등

□ 대표 안내전화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콜센터 02)410-1177

본 시행 계획은 2020년도 연간 추진일정 안내를 위한 공고이며, 응시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시험 1개월 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진흥기금 조성**
스포츠트롯, 경륜·경정 사업 등을 통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  **체육진흥기금 지원**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 등 육성 지원
 -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 건립 지원
 -  **국제대회 개최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유치 지원
 -  **체육복지사업 지원**
체육인 연금, 저소득층 스포츠참여이용권, 국민배려100 등 지원
 -  **스포츠 과학 연구 및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 정책 개발, 스포츠 과학 연구·산업 활성화